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원[한시임기제] 채용 공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한시임기제7호	1명	임용일~2027.7.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대전)

※ 결원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의 근무 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일 포함)으로 함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산업보건 (보건관리자)	한시임기제 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 업무상 사고 및 질병원인 조사·분석 -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축·운영, 보건교육 - 소속직원 보건관리 등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11.26.) 기준]

※ 학위 요건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임용예정일(2026.12.15.)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산업보건 (보건관리자)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①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간호사 면허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면허신고증' 함께 제출 必 ②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채용대상 직무(산업보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채용대상 직무(산업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한 업무에 한함 ※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50%를 인정함
		학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위 :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환경보건, 산업위생관리, 산업보건간호학과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관련 학과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자격증, 학위 요건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1 하여 응시하십시오.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6. 11. 26. 예정)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6. 12. 1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기업체 등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증' 요건의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은 50%를 인정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026.12.15.)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11.5.) 기준]

우대요건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직무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채용대상 직무(산업보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채용대상 직무(산업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한 업무에 한함	
	○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 관련분야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 불인정)	
구분		대상 자격증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보건지도사
기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안전, 간호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11.5.) 기준으로 요건

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2026.10.26.)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최대 5년)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채용대상 직무(산업보건)
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채용대상 직무(산업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한 업무에 한함

- [자격증] 응시 요건으로 사용한 자격증 외 아래 직무분야 자격증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구분	대상 자격증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보건지도사
기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안전, 간호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불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10. 26.(월) ~ 11. 5.(목)	'26. 10. 29.(목) ~ 11. 5.(목)	'26. 11. 20.(금)	'26. 11. 26.(목)	'26. 12.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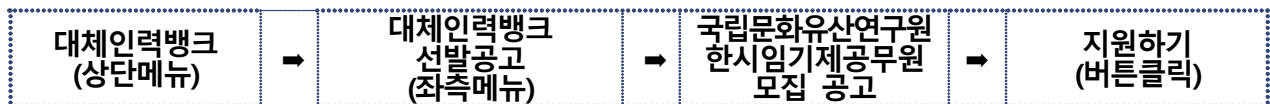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0. 29.(목), 09:00 ~ 11. 5.(목),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에 게시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대체인력뱅크 이력서 입력) : 온라인 첨부

* 첨부파일 용량 초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우편 제출

구분	입력사항	비고
공통사항 (필수 입력)	개인정보	온라인 작성
	학력사항(필수요건 관련) * 졸업증명서(학위증) 첨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온라인 작성 * 기타첨부파일란에 스캔본 첨부

구분	입력사항	비고
	<div>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div>	
	경력사항(필수요건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첨부	온라인 작성 * 기타첨부파일란에 스캔본 첨부
	자격사항(필수요건 관련)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간호사 면허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면허신고증' 함께 제출 必	온라인 작성 * 기타첨부파일란에 스캔본 첨부
	자기소개	온라인 작성
	업무수행계획	온라인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1호 * 기타첨부파일란에 스캔본 첨부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2호 * 기타첨부파일란에 스캔본 첨부
	정부수입인지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기타첨부파일란에 스캔본 첨부
	주민등록초본 1부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 기타첨부파일란에 스캔본 첨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기타첨부파일란에 스캔본 첨부	자격증 사본(우대요건 관련) * 간호사 면허증을 우대요건으로 하는 경우 '면허신고증' 함께 제출 必	
	경력(재직) 증명서(우대요건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증빙서류 우편 제출 시 기한 : 2026. 10. 29.(목) ~ 11. 5.(목)

- 접수처: (우)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 운영과 인사담당자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2. 7. ~ 12. 10.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근무조건 등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2. 15.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대체자 휴직종료(2027. 7. 2. 예정)일까지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주 35시간 근무로 비례 적용)
 - **한시임기제 7호 봉급액 : 월 2,230,200원 (주35시간 근무 기준)**
※ 2026년 한시임기제 7호 봉급액(주40시간 근무 기준) : 월 2,548,800원
 -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가족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등
 - －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 적용
 -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9 안내 및 참고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

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뱅크 내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의 보유기간은 대체인력뱅크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시점으로부터 2년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2년간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042-860-9122)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산업보건		한시임기제 7호	1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대전)
주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 소속직원 보건관리 - 업무상 사고 및 질병원인 조사·분석 -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 유해요인 등 유해요인 조사 및 보건관리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필요 지식		○ 산업보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지식 ○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지식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응시 요건	자격증	①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간호사 면허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면허신고증’ 함께 제출 必 ②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채용대상 직무(산업보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채용대상 직무(산업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한 업무에 한함 ※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50%를 인정함	
		학 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환경보건, 산업위생관리, 산업보건간호학과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관련 학과	
	우대요건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직무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채용대상 직무(산업보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채용대상 직무(산업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한 업무에 한함 ○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 관련분야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중복불인정)		
		구분	대상 자격증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보건지도사	
		기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안전, 간호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 "응시요건" 중 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2026.11.26.), 학위는 임용예정일(2026.12.15.)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 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u> <u>출입국·외국인청</u> <u>(사무소)</u>	공무원 채용 관리	<u>복수국적 여부 조회에</u> <u>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u> <u>보유기관</u>	공무원 채용 관리	<u>학위, 경력사항 등</u> <u>응시요건 충족 및</u> <u>제출서류 진위여부</u> <u>확인</u> 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